

ISSN 2672-2013

2021. 06

경제문화공동체

# 더함 포커스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Vol.3

No.2



---

— 더함 포커스\_ 정책칼럼

- 08** 통계로 본 데이터폭력 및 스토킹 실태\_ 김경례
- 18** 스마트 팜 분야,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 가능성\_ 서승호
- 38** 광주광역시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현황과 권익 개선 방안\_ 오창민
- 54**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 추진방안\_ 이상진

---

— 책소개

- 64** 더함 총서 1. 광주의 집단지성 광주형을 말하다\_ 북더함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 정책칼럼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2021. 06. Vol.3 No.2



## ① 통계로 본 데이터폭력 및 스토킹 실태\_ 김경례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10.21.)을 앞두고, 국내 데이터폭력 및 스토킹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폭력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법죄조항 포함,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 부재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폭력 및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변화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② 스마트 팜 분야,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 가능성\_ 서승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시, 국가 경제 성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산업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실행 시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단순한 직무로서 당장 취업이 가능한 재정투입 일자리 형태다. 장애인이 진정 일하고 싶은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민간 일자리는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농업 분야 스마트 팜 산업을 활용한 장애인 민간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를 해보자 한다.

## ③ 광주광역시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현황과 권익 개선 방안\_ 오창민

광주광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에서 86.9%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의 94.7%가 여성이며, 20~30대가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 기준)은 190만 5천 원으로 복리후생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편임. 특히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177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음. 또한 상시 근로 5인 미만 등 병의원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 비율이 44.8%로 낮고, 실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10.4%에 그침.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게권 보장 및 시간 외 노동근절, 이직 시 경력 인정, 노동인권 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함

## ④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 추진방안\_ 이상진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자금이 크게 늘었으나 민간 자금의 유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 은행들은 사회적 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영세하여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자금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신협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타 단위신협과 차별화된 운영 원칙과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통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으로 출발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더함 포커스』는  
시민활동가 샘치과 손정수원장님의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故)장은주님을 추모하는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 정책칼럼



1. 통계로 본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실태\_ 김경례

2. 스마트 팜 분야,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 가능성\_ 서승호

3. 광주광역시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현황과  
권익 개선 방안\_ 오창민

4.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 추진방안\_ 이상진



# 01

## 통계로 본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실태<sup>1)</sup>

김경례(Kim, Kyung-rye)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kgr2037@naver.com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10.21.)을 앞두고, 국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폭력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벌죄조항 포함,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 부재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변화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데이트폭력, 스토킹, 젠더폭력,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 성평등문화 확산

1) 이 글은 사)광주여성의전화에서 개최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쉼터 '비상' 개소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표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애써 주신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1. 들어가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년 8월에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안(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간 수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으로 희생을 당했고 그때마다 그 심각성을 알리고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의 처벌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20여년이 지나서야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및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교제가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의 세뇌 등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다 같은 이유로 신고가 늦어지거나 신고율 또한 낮아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상담 및 신고, 형사입건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 303건이었고 2015년 7,692건에서 3년 사이에 54.3%나 증가했다. 또한, 2018년 8월 기준 데이트폭력 혐의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살인미수도 353건 발생해 매달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데이트폭력의 주요 동기는 ‘이별살인’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것처럼, 결별 요구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홧김에 우발적으로’, ‘무시해서’,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등 사실상 파트너를 성적 도구 및 소유물로 바라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파트너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는 소유욕에 기반한 지나친 집착에 근거한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 및 사회구조·문화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여성의전화 사무국에서 수집한 언론, 한국여성의 전화, 경찰청 2019년, 2020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언론통계 자료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분노게이지」의 2020년(2019년 통계), 2021년(2020년 통계)

2) “데이트폭력, 사회적 비극의 메아리로 떠돌지 않으려면”, 업다운뉴스, 2018.11.4.

발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자료와 경찰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찰청 통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언론통계 자료

2-1. 2019년

**【표 1】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기타	소재	주변인	총계
살인	47	32	9	88	11	99
살인미수 등	36	60	12	108	22	130
누계(명)	83	92	21	196	33	229

\*배우자관계: 현재 또는 과거(사실) 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데이트관계: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의 여성(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표 2】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불상	
배우자 관계	살인	0	0	4	7	14	6	5	2	9	47
	살인 미수 등	0	1	5	7	3	4	0	1	15	36
	합계	0	1	9	14	17	10	5	3	24	83
데이트 관계	살인	0	11	5	5	5	1	1	0	4	32
	살인 미수 등	3	13	9	6	7	1	2	0	19	60
	합계	3	24	14	11	12	2	3	0	23	92
기타	살인	0	1	1	2	4	0	0	0	1	9
	살인 미수 등	1	1	1	0	3	2	0	0	4	12
	합계	1	2	2	2	7	2	0	0	5	21
누계(명)		4	27	25	27	36	14	8	3	52	196
비율(%)		2.0	13.8	12.8	13.8	18.4.	7.1	4.1	1.5	26.5	100.0

(\*주변인 피해 제외)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했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살인미수) 여성은 배우자 관계에서는 83명, 데이트 관계에서는 92명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생활 통제부터 협박, 폭행, 납치 등 다양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및 주변인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태현 세 모녀 살인사건<sup>3)</su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높고(18.4%), 20대와 40대가 동률(13.8%), 30대(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스토킹은 사랑 또는 친밀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그간 왜곡된 성문화, 불평등한 젠더관계, 그리고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 2-2. 2020년

【표 3】2020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재	주변인	총계
살인	45	48	4	97	18	115
살인미수 등	50	77	4	131	39	170
누계(명)	95	125	8	228	57	285

\*배우자관계: 현재 또는 과거(사실) 혼인 상태의 아내

\*데이트관계: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의 여성(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3) 김태현은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 딸인 B씨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은 살해 이전에 B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 4】2020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1	4	12	14	5	3	6	45
	살인 미수 등	0	5	4	6	4	2	1	28	50
	합계	0	6	8	18	18	7	4	34	95
데이트관계	살인	1	12	7	6	9	5	1	7	48
	살인 미수 등	4	17	12	9	5	1	2	27	77
	합계	5	29	19	15	14	6	3	34	125
기타	살인	0	0	2	0	2	0	0	0	4
	살인 미수 등	0	0	1	0	0	0	0	3	4
	합계	0	0	3	0	2	0	0	3	8
누계(명)		5	35	30	33	34	13	7	71	228
비율(%)		2.2	15.4	13.2	14.5	14.9	5.6	3.1	31.1	100

(\*주변인 피해 제외)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의 피해자 모두 83명에서 95명, 92명에서 125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변인의 피해 역시 33명에서 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20대의 피해 비율(15.4%)이 높아졌고 2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청년 여성층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자료

#### 3-1.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7개소, 통합상담소 7개소, 이주여성상담소 1개소)로, 2019년 전체 상담 건수는 29,50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 14,775건, 성폭력 9,248건, 데이트폭력 592건으로 나타났다.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19년 상담 건수는 총 2,276건이다. 이 중 재상담이 1,034건, 초기상담이 1,24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초기상담 1,24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5】2019년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친족	애인· 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310	191	218	19	151	26	25	75
비율(%)	25.0	15.4	17.6	1.5	12.2	2.1	2.0	6.0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6	14	26	29	86	66		1,242
비율	0.5	1.1	2.1	2.3	6.9	5.3		100

### 3-2. 2020년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나 2019년에 비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모든 유형의 젠더폭력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9년 통계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20년 데이터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건을 제외한 초기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2020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합계
건수	475	587	182	126	122	1,492
비율(%) <sup>1)</sup>	41.6	51.4	15.9	11.0	10.7	-

\*중복응답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기타가 차지하는 비율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그 결과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

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증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표 7】 2020년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친족	애인·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272	179	193	28	133	23	16	64
비율(%)	25.1	16.5	17.8	2.6	12.3	2.1	1.5	5.9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21	10	36	18	71	20		1,084
비율(%)	1.9	0.9	3.3	1.7	6.5	1.8		10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포율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배우자, 애인·데이트 상대자, 친족 관계가 각 1, 2, 3위로 나타나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젠더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019년 2.3%, 2020년 1.7%에 그쳐 대부분의 젠더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경찰청 통계자료

경찰은 2016년 2월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했다. 또한, 스토킹 112신고 코드는 2018년 6월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실태와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검거 인원은 산출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데이트폭력 피해자 수는 1만 245명에 달하며 이 중 77.6%가 여성으로, 범죄 자체가 젠더폭력화된 경향을 보인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4%, 30대 25.2%, 40대 20%, 50대 14.3%, 60대 3.7%, 10대 2.8%로 나타나<sup>4)</sup> 20, 30대에서 데이트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

【표 8】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검거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스토킹신고	-	-	2,772	5,468	4,515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9,364	14,136	18,671	19,940
	검거	8,367	10,303	10,245	9,858

출처: 경찰청

\* 스토킹 112신고 코드는 '18.6월 신설(2,772건은 '18.6월~12월 통계임)/스토킹 검거 인원은 현재 별도의 스토킹 범죄 처벌조항이 없어 산출 불가'

\*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사안(단순 말다툼 등 현장종결, 중복·오인신고, 즉결심판, 훈방, 상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2018년에 비해 2019년,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연간 약 2만 건의 데이트폭력이 신고되고 약 1만 건이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데이트폭력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 피해 역시 연간 약 5천 건이 신고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핵심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이 젠더폭력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젠더폭력은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자에 위치하는 여성을 향해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이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 인식 등이 젠더폭력의 원인이다.

대검찰청의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9.9%였으나 매년 급증해 2017년에는 90%를 넘었다. 같은 해 8만 4,000여 명의 여성이 상해를 입었고 1,367명은 사망했다.<sup>5)</sup> 이는 폭행, 성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을 젠더 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안전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대단히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젠더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상에서부터 불안과 공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간관계의 형성을 끼리게 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표 9】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계	기수	미수		
'16년	8,367	6,233	1,017	52	18	34	224	841
'17년	10,303	7,552	1,189	67	17	50	138	1,357
'18년	10,245	7,461	1,089	42	16	26	99	1,554
'19년	9,858	7,003	1,067	35	10	25	84	1,669
'20년	8,982	6,416	898	31	14	17	51	1,586

출처: 경찰청

5)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

## 5. 문제점 및 제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죄명이 ‘지속적 괴롭힘’이었던 만큼 다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었다. 처벌 수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정의). 주지하다시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일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에서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절차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제3조~제11조)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황이라면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sup>⑥</sup>

또한, 현행법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선 변호사들은 “데이트폭력이 갖는 특수성(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기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접근금지가처분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는

---

6)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인순, 피해자보호강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뉴스프리존. 2011.6.11

등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또한 “데이트폭력을 피하기 위한 저항이 폭력으로 기소되거나 데이트폭력에 수반된 성폭력이 연인 간 문제로 여겨져 기소가 안 되거나” 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중심적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 없이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금번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며 포괄적차별금지법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 제재규정을 담은 포괄적 젠더폭력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는 항상 여성인권 존중과 성평등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실질적인 젠더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흥보 강화,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및 젠더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제도 마련, 젠더폭력加害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과 가정, 학교, 마을, 직장 등 일상에서 젠더차별 해소와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7)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여성신문, 2020.7.4



## 들어가며

장애인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로 스마트 팜을 활용하고 기획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왜 스마트 팜인가?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심사를 위한 발표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기업인의 스마트 팜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의 사업 발표를 보게 됐다. 농업 분야 일본기업을 벤치마킹하여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통해서 수익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KT 스마트 팜 솔루션을 후원받아 최소 노동, 최대 고용, 행복 추구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ICT와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은 장애인의 신체적인 격차를 줄여주는 기술기반의 사업아이템으로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더해 보조공학을 접목한다면 그동안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했던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장애인만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가능한가? 국내 스마트 팜 지원 정책과 사업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기반구축,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단발성 지원과 사업간 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안을 개선한 수요자 중심 통합 지원체계 형태의 스마트 팜 장애인 민간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보조공학을 접목한다면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 아이템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세 번째, 노동을 통한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농작물 생육관리를 하면서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남양주 직업재활시설장에 의하면 스마트 팜 분야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과 후의 변화로 개개인의 삶의 만족감이 높아졌고 작물 재배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치유농업의 가능성도 봇기에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위 스마트 팜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작성한 기획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 I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팜 단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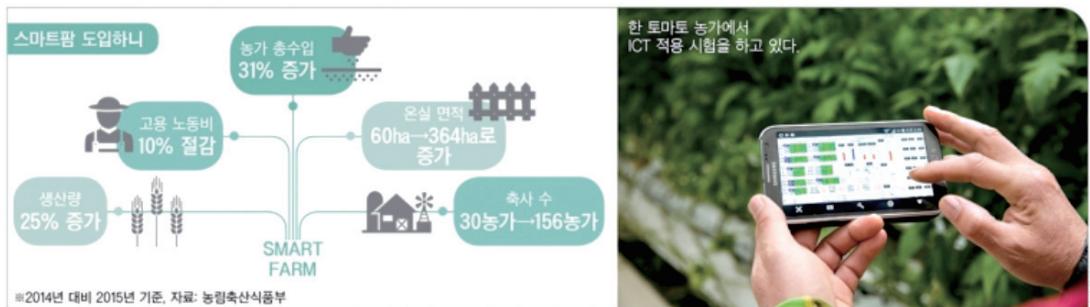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사업목적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차 산업인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2차 산업(가공) 및 3차 산업(유통, 관광 등)까지 영역을 넓혀 6차 산업( $1\times 2\times 3$ )으로 육성
-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로의 육성

### • 제안배경

- 국내 농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기후 변화 심화 등으로 논밭 중심의 전통적인 농가의 영농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 노동력과 에너지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가능한 농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 이동과 작업 편의시설을 구축하면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도 쉽게 일할 수 있어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농업과 사회복지가 결합된 유니버설 모델을 적용한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애인 스마트 팜 구축 비용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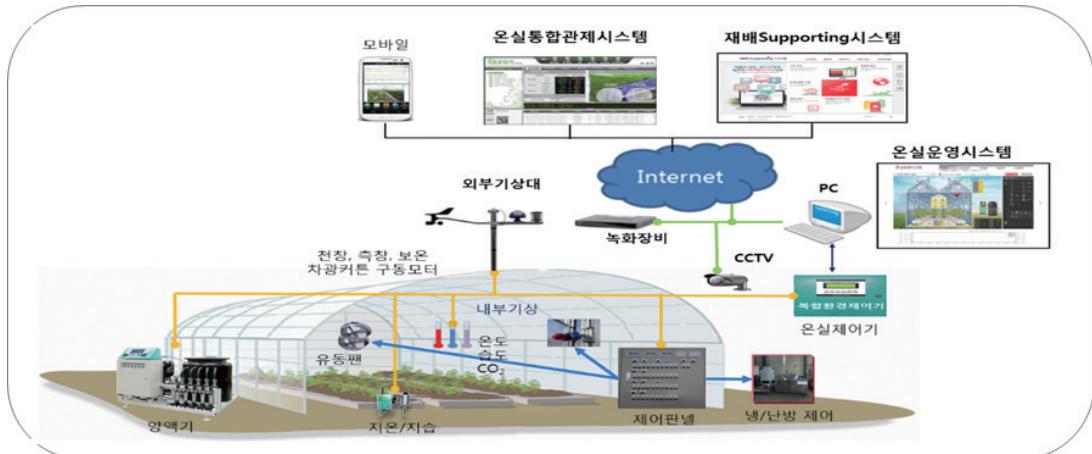
### • 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다수고용사업장, 표준화 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답보상태이고 임금 수준도 낮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택근무, 원격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고용되는 장애인은 한정적임.
- 복지(Welfare)+교육(Education)+일(Work)+농업(Farm)을 ICT 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작물 재배 사업 추진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경쟁력이 저하된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식량자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과의 적합성 및 연계성

- 최근 농업기술은 ICT 기술과 융합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팜에 의한 농업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 농업의 주요 분야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관협업형 신 비즈니스 시장 창출 기반 제공

- 사업참여 대상자들에게 스마트 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ICT 기술이 우수한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혁신성 및 독창성

- 농업의 대안으로서 스마트 팜

- 장애인 스마트 팜 구축사업은 일반 노지 농업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어, 반복된 업무에 적응력이 좋은 발달장애인에게 적용 가능
- 장애인 일자리라는 사회적 목적 이외에도 교육, 식품산업과 결합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선진 농업의 구현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 빅데이터, BT, IT 등의 융복합으로 예측 가능한 첨단도시농업 구축과 이를 통해 안전한 미래식량자원 확보
-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ICT를 융복합하여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공정 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

-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로서의 가능성과 기대

- 스마트 팜은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자동화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과 안전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미래 첨단 농업으로써 성장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 팜을 통한 첨단 농업의 영위는 향후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성장 산업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외에도 스마트 팜은 농업이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원예치료 효과로 인한 장애인의 정신적 안정과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 적용 기술 및 실현 가능성

### • 스마트 팜 운영원리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로 온실·축사의 온습도, CO<sub>2</sub> 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온습도, 일사량, CO<sub>2</sub>, 생육환경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환경정보 모니터링
- 자동·원격으로 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영양분·사료 공급 등 환경관리

### • 적용 모델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sub>2</sub>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고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관리

### • 스마트 팜의 종류

- 스마트 팜은 광원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 따라 자연광형, 자연광과 인공광 혼합형 및 완전제어(폐쇄형), 인공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토지/시설의 활용도에 따라 수평형과 수직 건물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스마트 팜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광, 또는 인공광 병용의 온실과 폐쇄된 공간에서 인공광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완전제어형 인공광형을 포괄하는 개념임.

### 【 스마트 팜의 종류 】

광원의 종류	건물 형태	작물재배	비고
자연광형	비닐온실 / 유리온실	수평형	
자연광, 인공광 병용형	유리온실	수평형	
인공광형	건물, 폐쇄된 공간	수직/건물형	



자연광형



인공광 자연광 병용



인공광 완전제어형

- 스마트 팜 실현가능성

-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견인이 가능함.
- 단순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서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가족 창업, 스마트 팜 규모화, 기술혁신(실증단지)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 팜 단지 조성
- 최근에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제어형, 수직형 스마트 팜이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 최근 ICT 기술과 융합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기업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완전제어형 수직형 스마트 팜인 식물공장은 보급 초기 단계로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 또한, 생산된 농산물도 부가가치가 낮고 가격경쟁이 심한 엽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의 개발 등 개선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 스마트 팜의 장점과 효용성 】

구분	내 용	비고
생산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나 온도 변화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li> <li>• 도시근교 또는 도심지에서 생산이 가능함으로써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의 감소</li> <li>• 계획에 의한 연중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고 토경재배와는 달리 연작에 따른 피해가 없음</li> <li>• 시설 자동화로 최소 노동력 투입으로 경제성 확보</li> <li>• 토지 이용률 극대화로 단위당 생산성 증가</li> </ul>	
소비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li> <li>• 원거리 동일 농산물 대비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옴</li> <li>•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 구매의 용이</li> <li>• 연중 생산에 따른 구매/소비(가격)의 안정성</li> </ul>	

-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사회현안 해결

-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 장애인의 작업환경과 안정성 등 장애인 일자리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에 의한 스마트 팜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케어팜(Care farm) 혹은 치유농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농장에서 자연과 접목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치유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다원적 기능 수행



## II. 현황 및 문제점

### ■ 장애인 적용 요건과 농업기술

-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과 직장으로서의 요건
  - 장애인에게 노동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활동이라는 의미 외에도 직장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타인과 교감하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종개발, 장애인 일자리 적합 직종 도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부 통계를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 15세 이상 장애인고용률 】

연도	1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취업자	고용률	비고
2014	2,449,437명	907,267명	37.0%	
2015	2,444,196명	849,517명	34.8%	
2016	2,441,166명	941,051명	36.1%	

※ 자료 : 한 눈으로 보는 장애인 통계, 2016 장애인고용공단

- 더구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함에 따라 대부분 짧은 고용 기간과 낮은 임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장으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직종개발 필요
- 또한, 안정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의 보호 고용시설의 업종을 장애인의 장점과 특성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바 첨단 농업 분야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이 동반되어야 함.

#### 【 직장의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구분	내 용	비고
직장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퇴근의 편리성과 접근성 용이(도심, 도시근교)</li> <li>• 직장(작업)환경의 쾌적성 유지</li> <li>• 직무/작업과정의 안전성(사고 위험으로부터 격리)</li> </ul>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수익성(경제성) 확보로 지속가능성</li> <li>• 장애인 직업으로서 미래 발전성과 사업의 확장성</li> <li>• 정서의 함양 등을 통한 장애 개선 또는 사회성 발달</li> </ul>	

- 스마트 팜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 스마트 팜에서의 농업기술은 식물의 생육 전반에 대한 환경적 여건이 완비된 상태에서의 농업으로 일반 노지 농업과는 다른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한 기초지식 외에 양액의 혼합과 제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육 기술로 구분될 수 있음.

#### 【 스마트 팜 필요 기술 】

구분	내 용	비고
작물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의 파종과 육묘, 재배, 수확에 대한 기술</li> <li>• 기능성 농산물의 개발 및 기능성 작물 재배</li> <li>•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생물학적 방제기술</li> </ul>	
양액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 식물의 양액 최적 조건의 규명</li> <li>• 양액 공급, 혼합 여과 및 시스템화 기술</li> <li>• 양액 재사용을 위한 소독 등 수명 연장 기술</li> </ul>	
생육/ 품질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 생육정보 계측 및 제어</li> <li>• 식물공장 재배 작물의 생육 및 생장 모델링</li> <li>•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제어(공기순환/기습·공조 기술)</li> </ul>	

- 스마트 팜에서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농업기술과 작업과정은 단기간의 반복적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장애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

이라 할 수 있으며,

- 최신농업의 출현 및 유기농 시장의 확산과 농업 분야의 젊은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은 장애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의 전망은 밝은 편임.
- 스마트 팜 설치비용을 절감해 창업자 부담 및 비용을 절감, 데이터 기반 경영관리로 농업 분야 장애인 스마트 팜 기반 조성

### ■ 국내 스마트 팜의 현황

-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리온실 지원사업에서 그 태동을 찾을 수 있음.
- 식물공장은 1990년대부터 농촌 진흥청 농업 관련 연구소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중 2000년도 이후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업과 ICT와의 융·복합은 직면하고 있는 농촌 및 농업의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 역할에 관한 관심이 점차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은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뿐 아니라 친환경, 기능성 작물 생산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정부 및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 영농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상업적 영농기술로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대학, 연구소 실험 수준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식물공장은 상업용 식물공장의 초기 단계로서 주로 엽채류와 어린잎 채소 및 새싹인삼 등을 재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식물 공장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의 생산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음.

### 【 식물농장 사업 사례 】

회사명	설치	형태	생산면적	생산작물	비고
(주)바이오웍스	2014	완전제어형	188㎡	엽채류	
(주)미래원	2015	완전제어형	846㎡	엽채류(허브)	
(주)넥스트에이	2016	완전제어형	40㎡	엽채류	
(주)에그로닉스	2011	완전제어형	727㎡	근채류(인삼)	
(주)맥스포	2002	완전제어형	264㎡	엽채류	
(주)알가팜텍	2015	완전제어형	238㎡	엽채류	
베지텍스(주)	2013	완전제어형	661㎡	엽채류	형광등

### ■ 스마트 팜의 한계와 문제점

- 토지 이용률, 생산성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특히 첨단 농업으로서 미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 식물공장(완전제어형)은 아직까지 환경제어, 조명설비, 기계장치 등 식물 자동 생장 시스템 설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 새로운 첨단 농업으로서 저변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 일반 비닐하우스나 자연광형 시설, 온실 대비 관리, 유지를 위한 운영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 투자비용 대비 스마트 팜의 사업성과 경제성은 아직 낮은 수준임.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전문가 위주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 경영 노하우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에 애로가 있고,
- 기존의 교육, 돌봄, 고용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 미흡
- 공공 부분의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일자리 성공모델 창출은 미흡

#### 【 식물농장 및 유리온실 시설 설치비 】

구분	식물농장	유리온실	비닐온실
금액	약 4천 원 / 평	8천 원 / 평	3천 원 / 평
광원	인공광형	자연광형	자연광형

※ 자료 : 한국 시설원예 사업평가단(2016)

- 재배 작물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엽채류 위주에서 탈피하여 특용작물 재배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작물 재배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계절의 기후 변화가 뚜렷하고 기상과 계절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며, 일정한 품질을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작물의 장기 공급 계약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또한, 기능성, 건강이나 의약용 원료용 농산물 생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은 스마트 팜이 갖는 생산성에 의해 충분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음.

#### ■ 선진사례

- 【일본】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스마트 팜을 육성 중
  - 2009년부터 스마트 팜 수를 3배 확대 보급하고 설립비용을 30% 절감하는 정책 목표를 책정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스마트 팜 육성을 통해 농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 사업으로 전환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 농림수산성은 2009년 중단되어았던 스마트 팜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고 스마트 팜 실증

전시사업을 전개하여 2016년 현재 전국에 200여 개의 스마트 팜을 운영 중

- 2011년 농업을 ICT 융합 기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6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하여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음.

#### 【 일본의 장애인고용 목적으로 설립된 스마트 팜 사례 】

회사명	설치연도	주요품목	면적(m <sup>2</sup> )	인력	스마트 팜 설치 목적 및 사업현황
큐피드페어	2003	양상추	59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고용목적으로 설립</li><li>• 연매출 1.5억 엔 수준</li><li>• 지역 레스토랑 및 슈퍼 대상 판매</li><li>• 최근 지역 학교급식 납품에 집중</li></ul>
야채공방	2008	양상추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노인 및 장애인 고용목적으로 설립</li><li>• 연매출 약 8천만 엔 수준</li><li>• '사라다 데뷔'브랜드로 판매중</li><li>• 칼슘 고함유 채소 개발 판매</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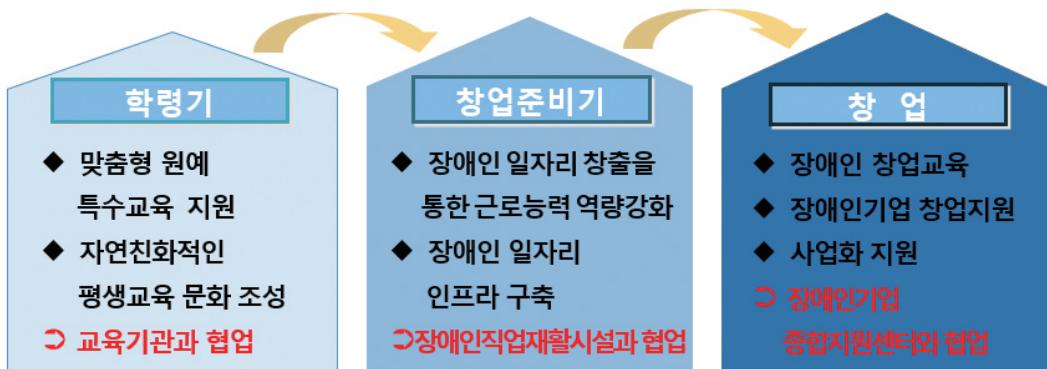
※ 자료 :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제49호(2013. 03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유럽】유럽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 팜을 통해 엽채류, 과채류, 허브 및 신품종의 육종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스마트 팜을 활용
  - 네덜란드는 스마트 팜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식물생산시스템 개발, 세계 스마트 팜 기술을 선도
  - 스웨덴은 스웨데포닉(Swedponic)이라는 엽채류 생산 스마트 팜을 유럽 전역에 설치하여 스마트 팜을 실용화
- 【중국】스마트 팜 개발에 늦게 뛰어든 중국은 도시에 필요한 채소의 부족 현상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스마트 팜 실현을 위해 가정, 학교, 건물과 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식물공장 이용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음.

### III. 추진 방향 및 목표

#### ■ 추진 방향

- 장애인 중심 한국형 스마트 팜 비즈니스모델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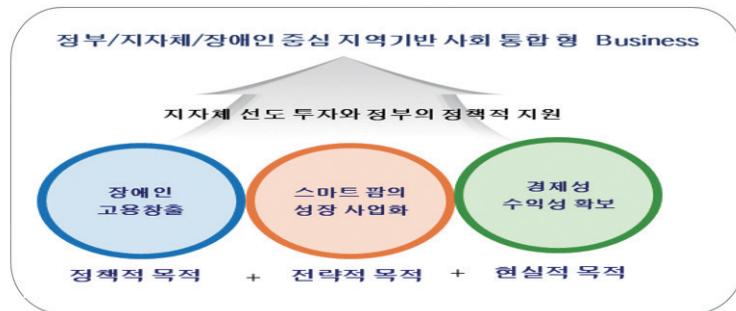


- 스마트 팜을 통한 선진 농업의 구현이 장애인고용 창출이라는 본래의 방향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성과 수익성 확보 필요
  - 가공·판매시설, 문화 공간까지 갖춘 '복합 커뮤니티'로 운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반의 사회통합형 비즈니스모델인 민·관(시민, 기업, 정부)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필요
  - 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포용 사회 구현
- ※ 농업이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장애인 일터로 최적의 장애인 탈시설화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팜 창업자금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실패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스마트 팜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팜 실증단지구축 및 조직간 연계강화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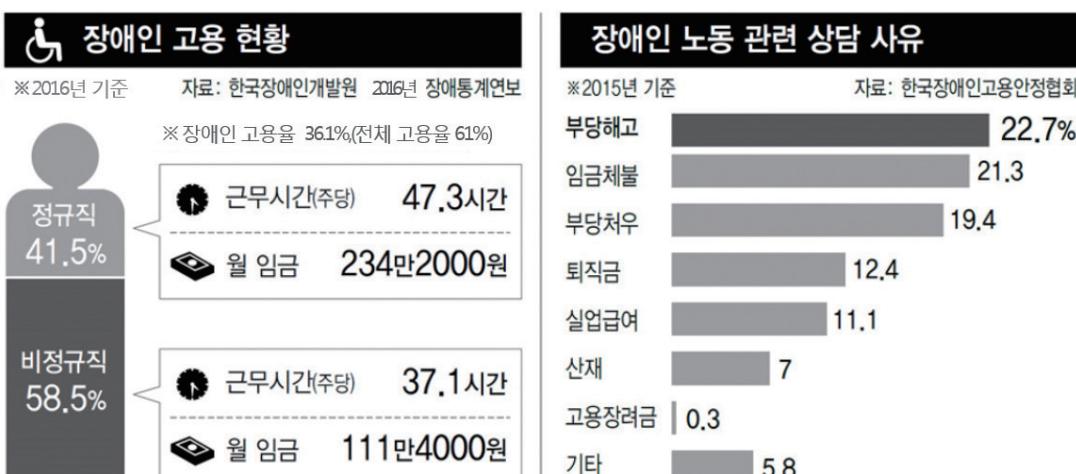
**【 사회통합형 장애인 스마트 팜의 개념 】**



### ■ 추진목표

- 유휴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유휴시설(舊 광산구 유스호스텔)을 활용하여 복지(Welfare)+일(Work)+농업(Farm)을 ICT 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작물 재배 솔루션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의 제한된 노동력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 집약적 농산물 생산과 생육환경의 최적화로 생산성·소득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미래식량자원 확보
-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일자리의 생태계 변화 추구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스마트 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스마트 팜 직업재활시설 신설
  - 장애인정책자금 및 농지임대 제도를 통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진입 지원
  - 스마트 팜 사업 추진을 위하여 ICT 융복합 시설도입이 가능한 기반 자체를 확대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ICT 활용능력 및 작목별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스마트 팜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원
  - 사후관리(A/S)와 같은 핵심기능을 지자체와 연계기관에서 지원하여 장애인 창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 IV. 세부 추진방안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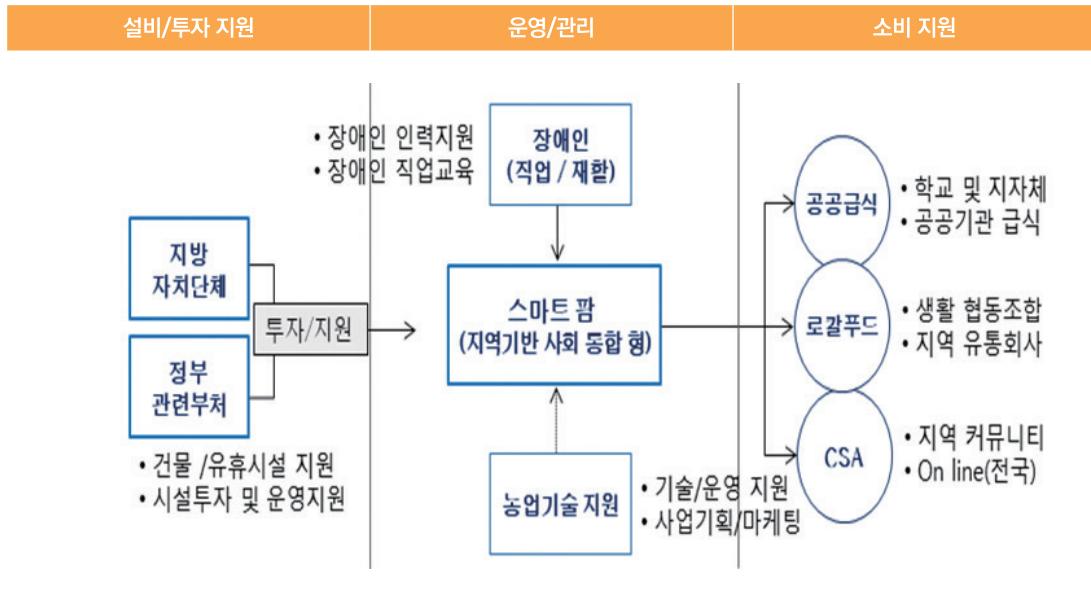
- 사업 기간 : 2020년~2030년
- 사업 위치 : 舊 광산구 하남동 인근
- 사업 비 : 10년 4,100백만 원
- 사업내용 : 스마트 팜 단지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기업, 자활기업 등의 형태로 취약계층 창업지원
  - 농업교육, 고부가가치 식물재배 지원, 스마트 팜 임대, 농업 컨설팅, 판로지원

### ■ 사업 추진체계

- 【추진단 구성】광산구, 교육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력확보】복지시설 및 단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협약
- 【판로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유통채널 확보
  - 공공기관 :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 농협로컬푸드
  - 민간기업 : 농협, 마트, 할인점, 농산물판매점
- 【교육지원】스마트 팜 분야별·품목별 핵심기술 교육과정 운영
  - 기본·전문·심화 등 수준별 단계 교육 추진
  -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재활시설 등
- 【기술·현장지원】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체계 구축

- 시설원예·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운영(농업관련학교, 기관 등)
- 다양한 방식의 ICT 활용기술 현장적용 및 확산
- 스마트 팜 기술공감 밴드 활용 등 SNS 커뮤니티 확대  
※ SNS(밴드)를 활용한 스마트 팜 프로젝트 추진단 소통 및 홍보

### 【 지역 기반 사회통합형 스마트 팜 】



### ■ 시설물 구축개요

- 【스마트 팜 재배시설 구축】온실, 식물공장, 교육장, 부대시설 등
  - (1차년도) 스마트 팜 단지 구축, 장애인 영농 기업육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주요설비는 장애인의 작업조건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 운영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설치
  - (2·3차년도) 창업자금 지원, 농업기술 이전, 판로확보 지원
  - (4·5차년도) 수출, 체험장, 관광상품 등 6차 산업 직접화단지 조성  
※ 1차 산업인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2차 산업(가공) 및 3차 산업(유통, 관광 등) 까지 영역을 넓혀 6차 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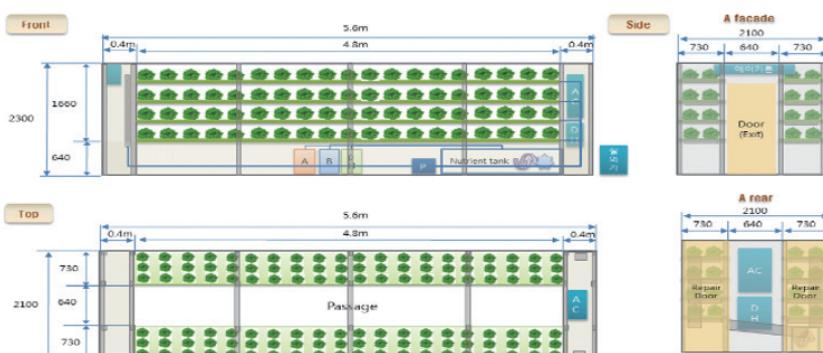
• 스마트 팜 구축 모델

- 비닐온실

구분	내용	비고
면적	1,000평(5개동)	
형태	3중 내재해 형 비닐온실	
시설	재배 작물	엽채류, 과실류(딸기 등)
	광원	자연광원
생산시설	CO <sub>2</sub> 공급기, 양액공급기, 공조시설, 재배대, 전기 보일러, 내/외부 센서, 기상센서 및 통합제어 시스템	
구분	내용	비고
온실 면적	1,000평(3,305m <sup>2</sup> ) / 단동형 5동	
기둥간격	8.5m	
섹션간격	0.7m	
온실 높이	동고 2.8m	
설계기준	풍속 34m/s, 적설하중 450N/m <sup>2</sup>	

- 식물공장

구분	내용	비고
면적(재배상 기준)	다단 입체형(5단) / 100평	
시설	재배작물	엽채류, 과실류(딸기 등)
	광원	형광등
생산시설	CO <sub>2</sub> 공급기, 양액 공급기, 공조사설, 재배대 육묘장, 소독실, 양액관리실, 작업장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수도세, 양액비, 종자대	
생산성	생산주기 : 30일~35일	



## ■ 시설물 구축 및 운영비용

• 규모 : 비닐온실 5동(200평 단동형 × 5동), 식물공장 100평

• 구축비용 :

- 비닐온실(200평 단동형 × 5동)

(단위: 천원)

구분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계						
가설/기초공사	5	식				
온실공사(단동형)	5	식				
전기설비	5	식				
양액 시스템	5	식				
에너지 설비	5	식				
포그시스템	5	식				
유동fan시스템	5	식				
컴퓨터 제어	5	식				

※ 예상 구축 비용은 설계 및 시공 전문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식물공장(100평)

(단위: 천원)

구분	기본설비	규모	시설원가	소요금액	비고
계					
외부건물	철골 콘크리트	100평			
재배 시설	소계				
	조명시설	LED Lamp LED Lamp용 SMPS	7set 7set		
	재배시설	재배 베드(5단/line) 양액자동 순환 설비 공조시설(난방) 급·배수시설 자동화 시설	7set 1조 1식 1식		
	기타 부자재	부품 제작 가공비 기타 부자재류	7set 7set		
	관리비/이윤	관리비 이윤	10% 10%		
관리/운영시설	사무실 및 집기비품 전산투자	10평			

※ 예상 구축 비용은 설계 및 시공 전문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운영비용

(단위: 천원)

항 계	목	세	세부내역	소요금액	비고
운영비 (201)	일반수용비 (01)	사무용품	PC, 테이블,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통신 : 500 * 12월 전기 : 3,500 * 12월 수도 : 1,000 * 12회		
		제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험료(화재, 건물, 차량)		

• 사업비 확보 방안

- 스마트 팜 구축 비용 : 2020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공모
- 운영비 : 구비 확보 또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업무 담당부서와 사업비 지원 대책 논의

## V. 추진일정



## VI. 기대효과

### ■ 스마트 팜 구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고용 효과

- 스마트 팜에서의 농업은 식물의 성장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줄으로써 노동 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재배 작물의 파종과 정식, 그리고 양액의 공급, 조절, 작물의 수확·포장단계의 인력 투입과
  - 재배 대상 작물의 생육단계별 데이터 취합을 통한 식물 자동 생장 모델의 구현, 양액의 혼합 및 재사용 기간 연장에 관한 실증 등 농업전문가로서의 작업과
  - 출하 및 판매관리 등의 관리 업무와 장기간의 집중도가 낮은 중증장애인의 업무 능력

까지를 고려했을 경우

- 스마트 팜 재배 면적 100~150평 기준 8~1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단순한 고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스마트 팜은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민·관·장애인 상호 연계한 지역 기반 사회통합형 스마트 팜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성이 있는 사회적 비즈니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 도시농업과 연계한 스마트 팜 농업의 6차 산업화

- 스마트 팜을 통해 현재 취미와 공동체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시농업을 사업성과 경제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 1차 산업 생산물의 단순 유통 이외에도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학교·주민들에 대한 농업 학습체험을 접목하여 스마트 팜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사회적 농장을 구축할 수 있음.

### ■ 농업을 통한 원예 치유 효과

- 스마트 팜에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불안과 긴장감의 이완, 충동의 억제 및 실패나 좌절에 대한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 작업과정에서 스스로 계획수립과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의 결과에 대한 자기 평가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심리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음.
- 원예의 치료적 효과는 식물 혹은 자연환경, 작업, 활동 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작체험과 감각체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식물의 생장과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장애인에게 최적이라 할 수 있음.

#### 〈참고〉 장애인 일자리 담당기관 비교

구분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	장애인 직업재활 공공형일자리 취업지원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교육 훈련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창업 교육 장애인기업지원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공공형일자리 취업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장애인정책연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인지원 국제협력사업 장애인등급제폐지 유니버설디자인환경인증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인지역맞춤형취업 보조공학기기지원 근로지원인지원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맞춤훈련및교육 장애인정책연구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성장기반구축 장애인기업우선구매제도 장애인창업교육 장애인정책연구

# 03

## 광주광역시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현황과 권익 개선 방안

오창민(Oh Chang Min)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

power2people@naver.com

광주광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에서 86.9%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광주비정 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의 94.7%가 여성이며, 20~30대가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실수령 기준)은 190만 5천 원으로 복리후생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편임. 특히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177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음. 또한, 상시 근로 5인 미만 등 병의원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 비율이 44.8%로 낮고, 실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10.4%에 그침.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게권 보장 및 시간 외 노동근절, 이직 시 경력 인정, 노동인권 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함

키워드: 병의원종사자, 노동인권보호, 근로감독강화, 휴게권 보장, 시간외노동근절, 이직시경력인정

# 1. 광주지역 병의원 현황

## ■ 의료기관의 구분

-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하여 나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함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성됨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성됨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표 1】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상급종합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	의원
주요 대상	주로 중증질환자	주로 입원환자	주로 외래환자
표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li><li>②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li><li>③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li><li>④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li><li>⑤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li><li>⑥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li><li>②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li><li>③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li><li>④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li><li>⑤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li><li>⑥ 의원표준업무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li><li>②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li><li>③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li><li>④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li><li>⑤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li><li>⑥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li></ul>

	상급종합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	의원
표준 업무	⑦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⑧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표준업무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⑨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⑦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⑧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⑦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 받은 환자의 진료
권장 질환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 ■ 광주광역시 병의원 현황

- 2020년 3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전체 병의원 수는 2,184개소이며, 그중 조사 대상인 의원은 949개소, 치과의원은 624개소, 한의원은 325개소로 모집단은 총 1,898개소임
-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광주 전체 병의원 수 대비 86.9%임

【표 2】광주광역시 병의원 현황

종별	의료기관 수(개)	비율(%)	
		전체	100.0
상급종합병원	2	0.1	
종합병원	21	1.0	
병원	83	3.8	
요양병원	66	3.0	
의원	949	43.4	
치과병원	13	0.6	
치과의원	624	28.6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16	0.7	
한방병원	85	3.9	
한의원	325	14.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현황」, 2020년 1분기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 2. 광주지역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실태조사 개요

### ■ 실태조사 개요

- 광주지역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실태조사는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보름간) 이루어졌음
- 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개인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로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 기관당 2명 내외의 종사자가 응답하도록 하였음
- 유효표본은 303명이며,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여성이 287명(94.7%), 남성이 16명(5.3%)으로 나타나, 소규모 병의원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됨
- 연령대별로는 20대 98명(32.3%), 30대 77명(25.4%), 40대 109명(36.0%), 50대 이상 19명(6.3%)으로 나타남. 30대 비율이 20대와 40대보다 낮아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 185명(61.1%), 치과위생사 61명(20.1%), 기타 19명(6.3%), 간호사 14명(4.6%), 방사선사 및 물리치료사 각 7명(2.3%), 임상병리사 및 경리전담 각 4명(1.3%), 치과기공사 2명(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응답자 특성

		빈도(명)	비율(%)
전체		303	100.0
성별	여성	287	94.7
	남성	16	5.3
연령대	20대	98	32.3
	30대	77	25.4
	40대	109	36.0
	50대 이상	19	6.3
직종 1)	간호사	14	4.6
	간호조무사	185	61.1
	임상병리사	4	1.3
	방사선사	7	2.3
	물리치료사	7	2.3

		빈도(명)	비율(%)
직종 1)	치과기공사	2	0.7
	치과위생사	61	20.1
	경리전담	4	1.3
	기타	19	6.3

주1: 간호사는 「의료법」제2조(의료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의거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 의거, '의료기사' 범주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각각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임상병리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방사선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물리치료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치과기공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함. 기타는 검안사(1명), 데스크 업무(3명), 원무과(행정) 업무(2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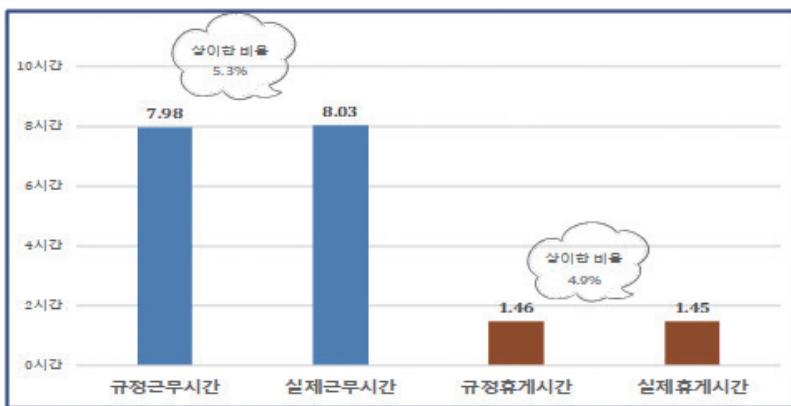
### 3.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조사 결과

##### ■ 노동시간 및 휴게 시간

-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휴게 시간은 1시간 30분, 인수인계/준비시간은 30분임
- 100명 가운데 5명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 추가적으로(평균 55분) 실질근무하고, 100명 중 5명은 실제 휴게 시간이 규정된 휴게 시간보다 짧음(평균 20분). 병의원에 인수인계/준비시간 규정은 없으나 실제 인수인계/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전체의 7.8%로 나타남
- 업무 인수인계/준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비율은 38.9%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규모의 병의원에서 포함되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인 이상 10인 미만(41.5%), 5인 미만(35.8%) 등임. 대체로 병의원 규모가 클수록 업무 인수인계 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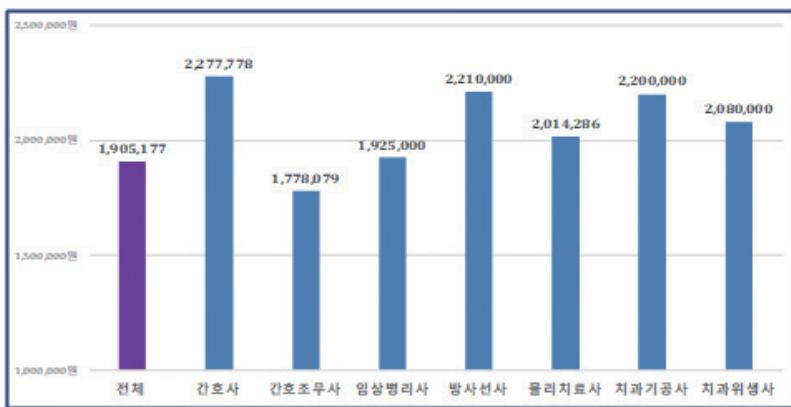
|그림 1| 노동시간 및 휴게 시간



## ■ 월평균 임금

- 월평균 임금(실수령 금액)은 190만 5천 원임. 정규직은 193만 원으로 병의원 특성상 대부분 주6일 근무를 하고, 복리후생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금 수준은 낮은 편임. 무기계약직은 173만 8천 원, 시간제·기간제 종사자는 156만 2천 원임
-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약 227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사선사(221만 원), 치과기공사(220만 원), 검안사 등 기타(217만 원), 치과위생사(208만 원), 물리치료사(201만 원), 임상병리사(192만 원), 경리전담(19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가 가장 많은 간호조무사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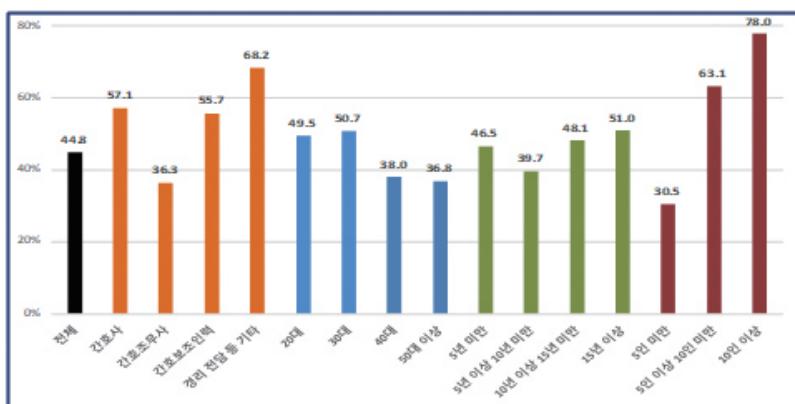
|그림 2| 직종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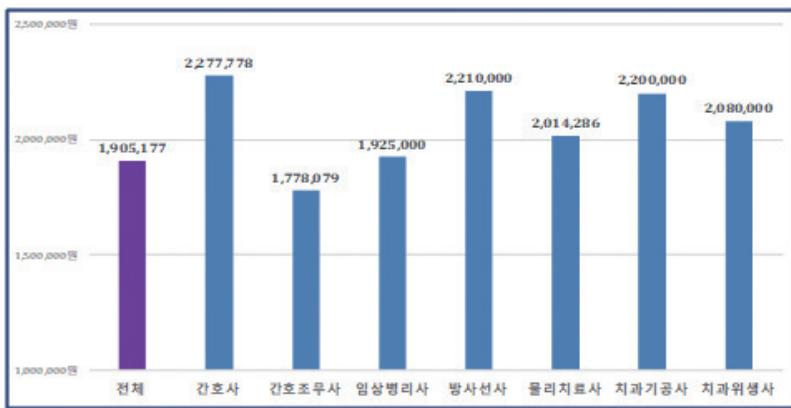
## ■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44.8%이고, 그렇지 않은 비율은 55.2%로 나타남. 이는 개인 병의원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병의원 소속 종사자의 연차사용 경험 비율이 78.0%,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에선 63.1%, 5인 미만 병의원에서는 30.5%로 나타남
- 소속직종별은 경리전담 등(68.2%), 간호사(57.1%), 간호보조 인력(55.7%), 간호조무사(3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개인 병의원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연차휴가 사용 경험 비중이 낮음
- 연차휴가 사용의 용이성에 대해 '아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응답은 10.4%에 불과했으며,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은 31.6%임. 반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도 15.8%를 기록함.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대체(충원) 인력 부족, 눈치 보임, 까다로운 조건 등이었음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연차수당(연가보상비)을 지급받는 비율은 전체의 14.7%이며, 연차수당 수령은 간호사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리전담 등(18.2%), 간호보조 인력(13.6%), 간호조무사(12.6%) 순임. 간호사를 제외하고 다른 직종은 상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음

| 그림 3 | 연차휴가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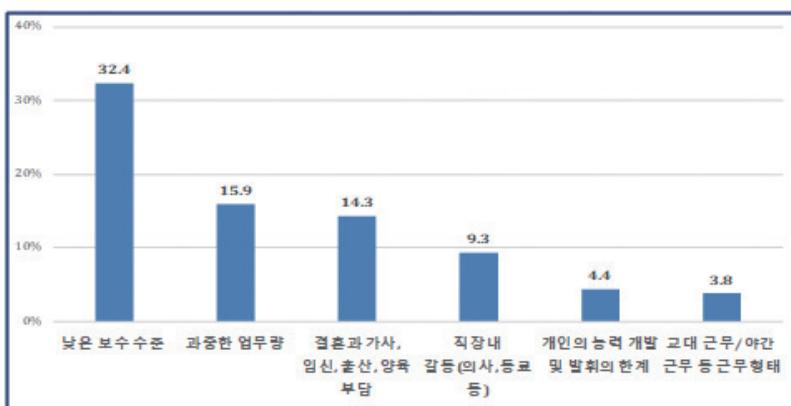
| 그림 4 |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자유롭게 사용+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



### ■ 이직 경험 및 이직 사유, 고충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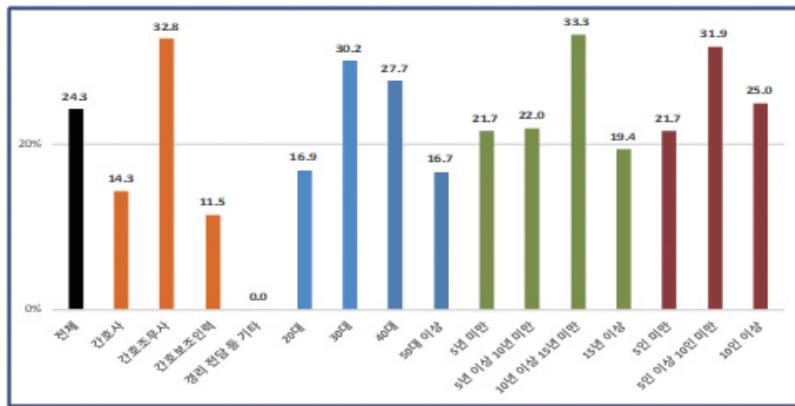
- 동일 직종 내 이직 경험은 64.2%이며, 평균 이직 횟수는 2.2회임
- 이직 사유 1순위는 낮은 보수 수준(32.4%)인 것으로 나타남. 즉 개인 병의원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저임금 때문에 이직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외 이직 사유로는 과중한 업무량(15.9%), 결혼과 가사, 임신, 출산, 양육 부담(14.3%), 직장 내 의사나 동료 등과의 갈등(9.3%) 등이 있음

| 그림 5 | 이직 사유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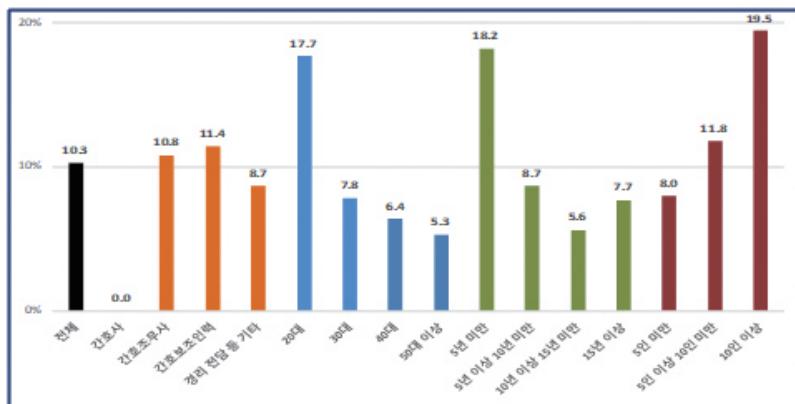
-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전 경력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임금이나 수당 등에 반영)받은 비율은 75.7%이며, 4명 중 1명은 일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경력 미인정 비율은 간호조무사가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호사(14.3%), 간호보조 인력(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경력 미인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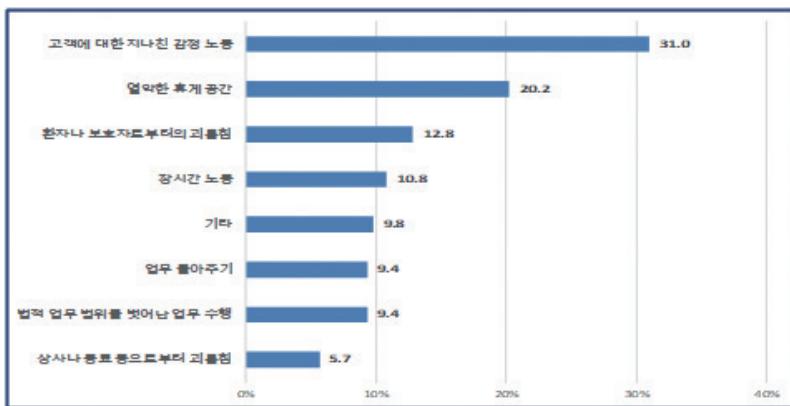
- 10명 가운데 1명(10.3%)은 6개월 이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간호 보조 인력(11.4%), 간호조무사(10.8%)들의 이직 의향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이 6개월 이내 이직 의향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7.8%), 40대(6.4%), 50대 이상(5.3%) 순임.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7| 6개월 이내 이직 의향



- 병의원 종사자 10명 중 3명(31.0%)은 현재 일터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 ‘고객에 대한 지나친 감정 노동’이라고 응답함. 이외 ‘열악한 휴게공간’(20.2%),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괴롭힘’(12.8%),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10.8%) 등의 고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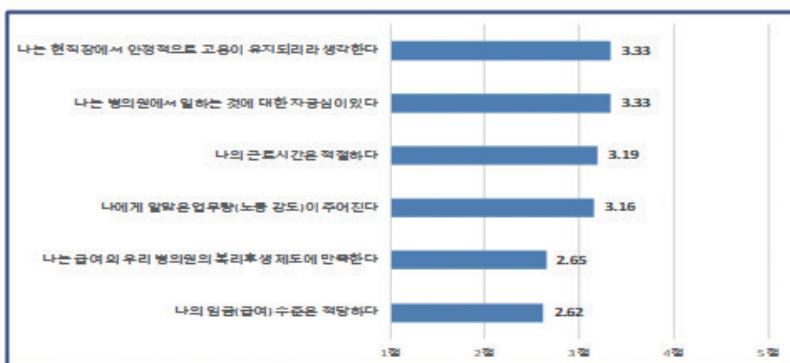
|그림 8| 고충 사항(복수응답)



## ■ 근무만족도

- 근무 만족도(5점 척도)는 대체로 3점(보통) 내외의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나는 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리라 생각한다’(3.33), ‘나는 병의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3.33), ‘나의 근로시간은 적절하다’(3.19), ‘나에게 알맞은 업무량(노동 강도)이 주어진다’(3.16) 등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임
- 반면, ‘나의 임금(급여) 수준은 적당하다’(2.62) 항목은 만족보다 불만족 비율이 더 높고, 마찬가지로 ‘나는 급여 외 우리 병의원의 복리후생 제도에 만족한다’(2.65)는 항목도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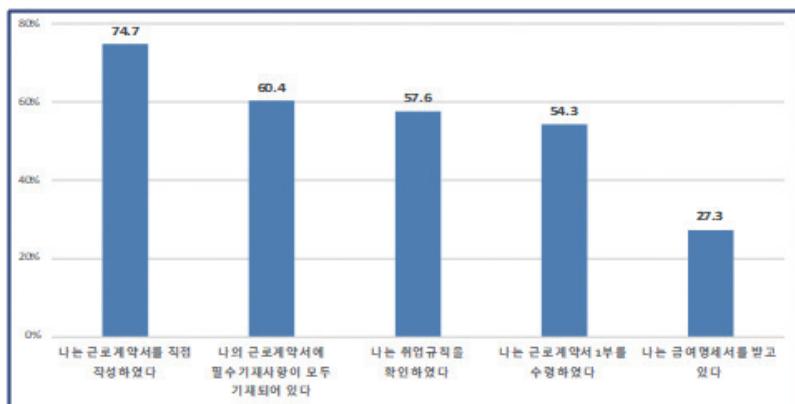
|그림 9| 근무만족도



## ■ 노동제공 관련 기본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수령, 취업규칙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병의원 종사자들이 얼마나 확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74.7%),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 확인(60.4%), 취업규칙 확인(57.6%), 근로계약서 수령(54.3%), 급여명세서 수령(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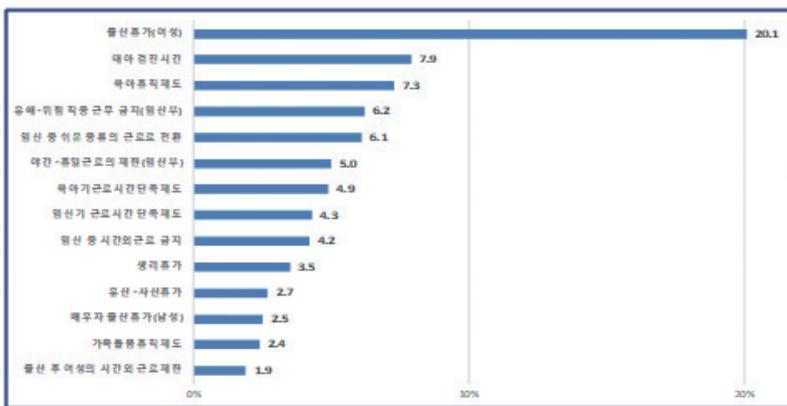
| 그림 10 | 노동제공 관련 기본 사항 확인 여부



## ■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병의원 종사자들의 실제 사용률(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을 살펴보면, 여성의 출산 휴가 사용률이 20.1%로 다른 제도에 비해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태아 검진시간(7.9%), 육아휴직제도(7.3%), 임산부의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6.2%), 임신 중 쉬운 근로로의 전환(6.1%), 임산부의 약간·휴일근로의 제한(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4.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4.3%),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4.2%), 생리휴가(3.5%), 유산·사산 휴가(2.7%), 배우자 출산휴가(2.5%), 가족 돌봄 휴직 제도(2.4%), 출산 후 여성의 시간 외 근로 제한(1.9%) 등의 순으로 사용률을 보임
- 개인 병의원 종사자가 대부분 여성이지만 모성권 관련 제도 사용률은 출산휴가(20.1%)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10% 미만의 낮은 사용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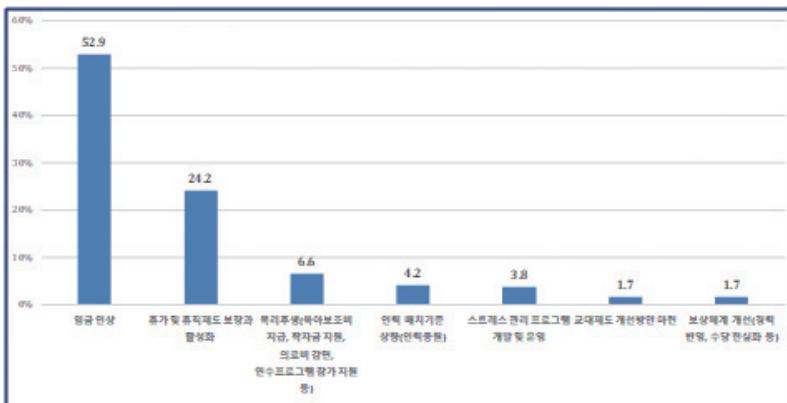
|그림 11|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제도 사용률(해당자에 한함)



### ■ 필요 사항

- 병의원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임금 인상(52.9%)이며, 다음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 보장과 활성화(24.2%) 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필요 사항 1순위



## 2) 시사점

### ■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 조성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수행
- 개인 병의원에 특화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관내 보급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유도

- 현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급여명세서는 추후 임금 체불 및 추가 수당 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사업주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됨
-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세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유도하고, 향후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또한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 병의원 근로감독 강화

- 병의원에 대한 불시점검 및 반복점검으로 근로감독 강화. 병의원 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 조성
- 최저임금 위반부터 각종 수당(초과근무 주휴, 휴가수당 등),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작성 여부 확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점검 필요
-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엄격히 집행
-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센터 마련 및 안내

## ■ 병의원 종사자의 휴게권 보장 및 시간 외 노동근절

-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노동시간을 전산화하여 시간외 노동(소위 공짜 노동) 근절
- 인수인계(준비) 시간을 명확히 규정, 노동시간에 포함
- 병의원 내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 휴게시간 보장(휴게시간 지시, 명령 금지)
- 연차휴가 사용 보장(5인 미만 병의원도 근로계약 시 연차휴가 반영하기)

## ■ 감정 노동 완화 방안 마련

- 병의원 종사자 대부분 환자를 대하는 대면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환자나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는 부당대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감정 노동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보호방안)
- 개별 현장 경험 사례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감정 노동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 작성

- 집단따돌림,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시키는 행위,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등 방지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작업중지권과 불이익 처분 금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현행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적용대상 확대 필요)

### ■ 종사자 처우 개선

-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가 특히 열악함. 최저임금법 위반사례를 적극 단속하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강구
- 개인 병의원 종사자들의 이직 사유는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량, 결혼과 가사,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동일 직종 내 이직 시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에 반영
- 근본적으로 임금인상, 복리후생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병의원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 필요

###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시간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지침 마련 및 의료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 ■ 여성 친화 환경 조성

-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여성 종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생활(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모성권 보호제도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 여성 노동자가 많은 병의원의 특성에 맞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유연근무제 실행 등으로 경력단절을 예방
- 병의원 밀집 지역 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거점 휴게공간 마련
- 광주광역시 여성친화일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연계 및 협약체결 유도
- 여성 인력을 적극 고용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검토

## ■ 병의원 종사자 대상 노동법 교육실시

- 노동권 교육실시 및 권리 보호 안내 (특히 권리 인식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병의원 종사자에게 맞는 커리큘럼과 교육자료를 구성하여 실시)
-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예를 들면 점심식사와 더불어 노동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수교육, 자격연수와 연계한 노동인권 교육 방안 마련
-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노조설립과 관련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병의원 노동자의 자조 모임 지원(공간, 강사 지원, 활동비 지원 등)
-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 교육, 간담회 진행. 노조설립과 가입절차, 법률자문과 사업주(병원장 등) 협의, 단체교섭과 협약 등 노조 조직화 전반에 관하여 지원, 연계



# 04

## 특별기고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sup>1)</sup> 추진방안

이상진(Lee, Sang Jin)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sjlee@ksifinance.com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자금이 크게 늘었으나 민간 자금의 유입은 제자리걸음이다. 시중 은행들은 사회적 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영세하여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자금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 신협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타 단위신협과 차별화된 운영 원칙과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통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으로 출발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 사회적 은행, 사회적 금융, 신용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1) 사회적 경제조직 및 종사자들이 조합원인 단위 신협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과 사회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유대범위로 하는 단체신협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 조합(<http://cu.ksenet.org>)이 구성되어 설립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 1. 사회연대신협 필요성

### 1) 사회적 경제 성장

토마스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했다.<sup>2)</sup> 자산가, 높은 임금의 전문직과 소상공인, 저임금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양극화는 세대 간(청년 vs 기성세대), 지역 간(수도권 vs 지역)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듯하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 퀘벡, 스페인 바스크 등 사회연대경제가 발전된 지역에서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은 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인 조직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도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영역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사회적 경제는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증사회적기업 2,908개소(2021.6.), 예비 사회적기업 2,642개소(2021.6.)<sup>3)</sup>, 일반협동조합 17,56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993개소, 협동조합연합회 110개소(2021.5.)<sup>4)</sup>, 마을기업 1,556개소(2020.10.)<sup>5)</sup>, 소셜벤처 1,509개소(2020.8.)<sup>6)</sup>, 자활기업 1,062개소 (2020.12.)<sup>7)</sup>로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30,000여 개에 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지정 및 설립이 매년 3~17%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도 매년 17~30% 성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신협, 생협, 농협, 수협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2)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과 금융기관의 한계

금융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 금융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

2)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장경덕, 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글향아리, 2014.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COOP/state/majorStatistics1.do>)

5) 마을기업 지정현황에 관한 기사(<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214>)

6)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기술보증기금, 21.2.17.)

7)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214>)

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공공부문을 위주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부문 자금공급목표는 2019년 3,230억 원, 2020년 4,275억 원, 2021년에는 5,16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8)</sup>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목표를 정하고,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집행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혹은 자산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책자금은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처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마중물이 되어民間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

2018~2019년 사회적경제에 100억 원 이상 대출을 했던 13개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000조 원으로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25배 이상이다. 만약 시중은행이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 1,213억 원으로 2019년 말(8,498억 원) 대비 2,715억 원(+31.95%) 증가하였다. 기업유형별 대출 비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8,810억 원(78.6%)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138억 원(19.1%), 마을기업 209억 원(1.9%), 자활기업 57억(0.5%) 순이다. 사회적기업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2,515억 원)하였다.

**[표 1] 시중은행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767	8,810	(78.6)	2,515	(39.9)
협동조합	987	2,020	(23.8)	1,460	2,138	(19.1)	118	(5.8)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9	(1.9)	64	(44.1)
자활기업*	87	38	(0.4)	140	57	(0.5)	19	(49.4)
소계	5,570	8,498	(100.0)	7,674	11,213	(100.0)	2,715	(32.0)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21.4.21.), 「21년 제1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8) 관계부처 합동('20.12.8.), 「20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19.11.7.), 「19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18.12.12.), 「18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문턱이 높다. 이들이 사회적 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가령, 전문 심사역 양성, 담당 직원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검증된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효과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예금 및 대출 고객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움직일만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은행의 총자산 대비 사회적 경제 자금 공급액은 0.04%로서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운영기관의 10~15% 수준으로 훨씬 소극적이다.

신협도 사회적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21년 4월 879여 개 조합 중 전국의 71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453억 원을 신규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20년 말 대출 잔액이 689억 원에 달한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을 위해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마냥 우호적일 수는 없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인터뷰<sup>10)</sup> 결과, 사회적 경제에 이해가 높은 신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평했다. 혹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대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신규대출을 늘리고자 했다. 실제 거점 신협과 사회적 경제를 위해 여러 차례 협력을 제안했으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지역도 있었다.

### 3) 기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한계와 사회연대신협의 필요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견제할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 불균형이 심하면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공급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거절,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 등은 중소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관계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관계금융은 거래금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용등급이나 담보, 재무제표와 같은 계량적인 경성정보(Hard information)보다는 기업가의 성품이나 평판 등 은행이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파악한 연성정보(Soft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방식이다. 기업이 특정 은행과

9) 2021년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 중에서

1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 및 전문가 43명 인터뷰(2020.9. ~ 2020.11.)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사적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기업정보들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도 거래를 통하여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여 축적하게 된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그 기업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관계금융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들이 있다. 그동안 사회연대은행(2003년)은 650억 원, 신나는조합(2004년)은 330억 이상 대출을 실행해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조기금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재단법인 밴드는 240억, 한국사회혁신금융은 145억 이상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해 왔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전국 40여개 자활공제기금의 연합회로 자활근로자,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9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다.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공공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이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 시중은행은 연성정보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여전히 보증 및 담보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조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예금통화 창출을 통해 자금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이 필요하다.

## 2. 사회연대신협의 운영 원칙

사회경제연대가 발전한 캐나다 퀘벡에는 사회연대경제에 특화된 신협이 존재한다. 데자르뎅 연대경제금고 (<https://caissesolidaire.coop/>)<sup>11)</sup>는 데자르뎅그룹의 회원조직으로, 집단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현하는 신협이다. 이들은 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②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홍보, ③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변화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자산은 1조 4천 6백억 원이며 전체 여신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이 76%이고, 그중에 주택협동조합 비중 37%이다. 대출 심사 시 결사체, 사업 비전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역적 기반이 아닌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기반에서 탄생했다. 일반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

11) 퀘벡 협동조합 연수보고서 (신협서울협의회 퀘벡연수단, 2015년)

수행 중이다. 2015년 기준, 노동자 630명, 협동조합 669개, 비영리조직 1,137개, 문화조직(문화NGO, 박물관 등) 등 집단적 기업 2,796개, 일반기업 244개, 개인 11,754명을 포함하는 조합원 14,794명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은 100명 수준이며, 이사회는 선출직 15명으로 전원 무보수로 자원봉사한다.

사회연대신협은 데자르뎅 연대경제금고와 같이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은행을 지향하며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의 믿음직한 금융파트너가 된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와 협동과 연대를 실현한다. 소유 구조, 의사결정 구조, 운영체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들은 사회적 경제와 협동과 연대를 통해 해결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수도권에서 예치되는 절대적인 금액이 많더라도 지역이 차지하는 예금 비중보다 대출 비중이 더 높게 유지한다면 지역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중요한 영업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서도 고려될 것이다.

넷째,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다양한 소위원회,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일부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더불어 성장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 3. 사회연대신협의 차별점

#### 1)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에 집중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 개인 대출 비중이 높다. 반면, 사회연대신협은 기업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적경제 기업이 규모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이익과 종사자 소득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늘어나는 여유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유입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늘어나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수신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가령,

①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조합원이 많은 협동조합에 특화된 예금상품을 통해 재원을 늘리고, 건강 증진 및 좋은 먹거리를 위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②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보증을 기반으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대출한 도거래(마이너스통장), 자금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기업 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합원 확대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알맞은 퇴직연금, 영업배상보험 등 공제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신협중앙회는 다양한 공제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의 경영환경, 영업행태 등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조합에게 비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귀중한 수익원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추진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금융을 강화한다. 여러 사회적경제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산화 프로젝트, 주거 빈곤층에게 시장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 택시노동자들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해결하고자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거액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높은 예대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관리역량을 강화시킨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복합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인민금고가 금융과 창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몬드라곤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노동인민금고는 총자산 32조 원으로 스페인에서는 3번째로 큰 신협인 라보랄 쿠차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연대신협도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인재육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몬드라곤의 기업국처럼 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지하게끔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기업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거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관리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상생협력대출을 수행하는 71개 거점신협, 중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기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신협들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사회적 경제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첫째, 당사자 자조기금,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보상채권(SIB), 지역기금, 크라우드펀딩, 마이크

로크레딧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sup>12)</sup>들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 우수 기업 발굴, 대출 심사 시 평판조회, 대출 받은 기업 사후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기관<sup>13)</sup>,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이 가능하다. 가령, 통합지원 기관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지원,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지원, 설립 희망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 기관과 협력하면 우수 조합원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추천하거나 기업 심사 시 평판정보를 제공한다면 위험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년 사업보고서를 취합 및 검토하면서 기업 현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기업에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소비자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한살림연합은 73만명이상의 소비자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는 25개 조합으로 구성되며 5만여 조합원, 출자금 133억 원, 400억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사 34명, 한의사 27명, 치과의사 19명, 간호사 64명, 간호조무사 139명, 요양보호사 20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271명 등 총 1,023명을 고용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 버진그린실험은 전체 협동조합운동의 일부라고 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간 협동에서 재정담당기구의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협의회가 적극 지원했고, 예대율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협동조합협의회가 관리하는 여러 보증기금대출 프로그램에서 대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다.<sup>14)</sup>

#### 4) 그린사회(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sup>15)</sup>

기후위기란 이윤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한 기업경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은 이윤이 아니라 이용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여야 한다.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26%를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12)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재단법인 밴드, 전국주민협동연합회 등 주요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13) 전국통합지원기관협의체,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대부분의 모법인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14) 구정숙,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15) 강민수, 그린사회로의 대전환 사회적경제가 앞장서자('20.1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90>)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기업경영을 얘기해 왔다.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사회적 경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게 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결심하게 된다. 플라스틱 제로,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과 같은 공익적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혁신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 조합을 비롯한 신협이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

## 4. 사회연대신협 성장방안

### 1) 초기 단계 : 사회적 경제, 거점신협 등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안정화

첫째, 거점별 지역신협과 협력을 통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연대신협이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10대 권역별로 주요한 거점 신협과 업무 제휴를 통해 여수신, 공제사업 등 조합원들이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공동 대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 통합지원기관, 당사자 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부터 신규 인증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체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 조합을 추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다.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우수 기업을 추천하면 우대 금리,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해당 기관은 사회연대신협에 기업 현황, 평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당사자 협의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대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대출 수요를 검토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대출이 많아지다 보면 대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증에 기반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손으로 인한 자기자본 확충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 2) 성장 단계 : 고객 접점 확대, 기업 육성을 통한 금융서비스 강화

첫째, 특화 지점 설립을 통한 핵심 고객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사회혁신파크, 소셜캠퍼스온, 헤이그라운드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 지점을 설립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소비자생협 매장,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 내 Shop-in-Shop을 운영하고,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조합원을 유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프리마켓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행사에 이동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상담을 통해 조합원을 확대한다. 가령, 캐나다 퀘벡 데자르뎅신협그룹은 2014년부터는 대학 인근에 청년층을 위한 복합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360d’라 부르는 복합점포에서는 졸업여행계획과 주택구매 등 청년층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금융상담과 강좌를 제공한다.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겸하는 ‘360d’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90%가 넘을 정도로 지역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sup>16)</sup>

둘째, 거점신협과 공동으로 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에 대해 상담 및 금융 교육,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연대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캐나다 데자르뎅의 지역조합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공동점포’를 운영한다. 1998년 출발한 공동점포는 지역조합들이 사전에 합의한 분담률에 따라 재원·수익·비용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중소기업에 대출·외환·보험·연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도시에서는 정보기술(IT)·유통·건설 등을 중심으로, 소도시에서는 농업·제조업·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지역산업 특화 영업도 한다.<sup>17)</sup>

셋째, 공공기관, 재단을 중심으로 예치금을 유치한다. 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복지개발원,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예산을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통합지원 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재단, 공익재단, 노동조합 관련 재단에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거액 예금을 유치하도록 한다.

### 3) 안정화 단계 : 사업 다각화,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

첫째,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을 통한 수익을 다각화한다.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펀드에 LP로 참여하여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ESG펀드, 그린펀드 등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다각화한다. 신협법 개정을 타법인 출자가 가능해지면, 이종간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타 신협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도 적극 추진한다. 합병은 비용 절감, 서비스 범위 확대, 규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조합원들에게 합병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알리며, 임직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가령 캐나다 베진그린조합은 5차례 합병을 진행하면서 합병 전과 합병 후, 피합병조합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또한, 합병 이후 확대된 지역에 실버타운아파트, 복지센터 등을 희사하여 합병 후 조합원 이탈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직장(병원, 기업) 신협 등을 인수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16) 구정욱,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17) 구정욱,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대한 참여를 확산시키고, 해당 기업의 계좌 유치 및 CSR 사업을 협력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집적되었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신협을 인수한다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트를 조성해 나가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셋째, 장기간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를 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5.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의 역할

해외에는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뱅크, 캐나다 데자르텡, 밴시티 신협, 이탈리아 방카에티카, 독일 GLS은행 등 사회적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금융기관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 관계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들의 연합체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는 200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65개 사회적 은행이 가입했으며, 7,0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GABV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없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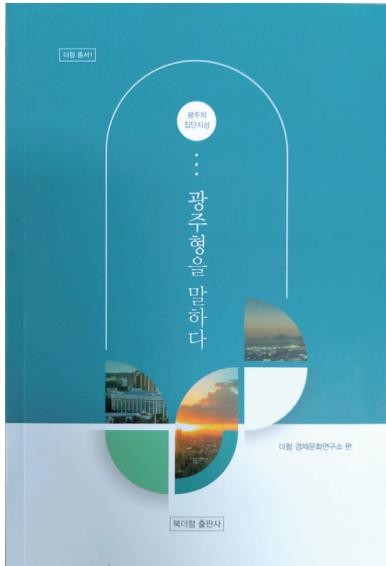
코로나 19 이후에 사회적 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정책자금을 마중물로民間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최근 설립 인가를 준비 중인 사회연대신협이 사회적 경제 내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사회연대신협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협동금융을 통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예금을 통해 사회적 경제인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으로 출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은행으로서 역할을 기대해본다.

---

18)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9.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금융, 단체신협으로 시작하자(이로운넷, 21.5.28.) (<https://www.er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80>)



## 더함 총서 1 소개



### 광주의 집단지성 광주형을 말하다

출판사: 북더함

출판일: 2021.05.18

이 책은 지역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이름을 딴 제도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정작 우리들도 ‘광주형일자리정책’, ‘광주형 돌봄모델’, ‘광주형 그린뉴딜 계획’ 등으로 호명하며 공공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음에도 ‘광주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공론의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30여명의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포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였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지면에 담아냈다.

하나의 실체로 정의될 수 없는 광주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도출되었지만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로 대변되는 5.18의 역사적 경험, 연대, 나눔, 상생, 다양성의 존중, 평등 등의 가치와 철학을 ‘광주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하며 그것을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과정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협치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에 데에서는 일정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 책은 총 6장, 32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형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광주형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에 글의 내용에는 혼재되어 있지만 1장은 주로 광주형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룬 글을 배치하였고 2장에서 6장까지는 미래의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제안을 다룬 글을 영역별(사회, 경제, 문화·예술, 교육, 도시재생)로 분류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체계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독립적인 글들이기에 각 장별 글의 순서는 편의상 필자의 성명순으로 배치하였다. 그래서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관심 있는 주제와 영역을 골라내어 일독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영선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발간사 中에서

##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전문위원 |

정대근	문현정보학 박사,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광주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권은비	생활과학 박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강사, 사회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 사무국장
김경례	사회학 박사,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김란희	여성학석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김수환	도시계획 박사, 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영미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종완	평생교육학 석사,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사무처장
김태호	행정학 박사수료,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기획실장
김허경	미술학 박사,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 현	철학 박사,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박경동	사회학 박사수료,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박철희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BK사업팀 학술연구교수
서승호	사회복지학 학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총괄매니저
서현희	지구환경과학 박사,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선봉규	정치학 박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책임연구원
안수창	공학 박사, 한국광기술원 기업성장기획실장
오창민	사회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윤영선	경제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대표
윤희철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숙영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주)좋은친구들 기획이사
이철승	경영학 박사, 광주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임남수	법학 박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
전창진	도시지역개발학 부동산학 박사,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주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주문희	교육학박사,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최지혜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최혜원	전기공학 박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선임연구원
홍성운	행정학 박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경제문화공동체

# 더함 포커스

2021.06. Vol.3, No.2

---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발행처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북더함)

발행일 2021.06.16

발행인 윤영선

편집인 정대근, 김정훈

디자인 전남대학교출판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1-6

전화 062.431.6339 FAX 062.262.6340

<http://www.eccplus.co.kr>

**ISSN 2672-2013**